

화재보험의 중과실 면책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8년 11월 29일 보험계약자 A와 보험자 B사이에서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광주시 동구 각화동 소재의 쇠파이프조 천막집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가구류 및 각종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으로, 보험금액을 7천 7백만원, 보험기간은 1988년 11월 29일부터 1989년 11월 29일까지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후 1988년 12월 22일 위 건물내의 각종 가구류 및 동산 일체, 보험금액 3천만원, 보험기간은 1988년 12월 22일부터, 1989년 12월 22일까지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1989년 8월 31일 22:00경 A가 경영하는 차씨 농방의 창고로서 약 20조의 자개장농 등 가구류가 적치된 위 건물내의 통로에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생긴 습기를 제거하여 가구류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 자개장농 등과 약 30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재래식 석유 난로 2개에 불을 지펴놓은 후 옆에 소재한 K가구점에서 C등과 맥주 7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날 24:0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석유 난로의 불을 소화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00:50경 위

석유 난로 부근의 자개장농 위에 놓여 있던 신문 등 종이 뭉치가 열려져 있던 창문으로 불어온 바람으로 석유난로 위로 떨어져 인화, 주위의 자개장농 등에 옮겨 붙으면서 건물 내에 적치되어 있던 자개장농등 가구류가 모두 소실되었다.

2. 서로의 이견

보험계약자 A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내에 적치되어 있던 각종 자개장농 등 가구류가 모두 소실 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보험자 B는 위 각 화재보험 계약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 A의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은 보험 분쟁 조정 신청 후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동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는데 광주 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가 위와 같이 위 건물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석유 난로에 불을 지펴놓았으면 쉽게 불붙을 수 있는 자개장농 등 목재로 된 가구류와 가구류 운반

시 흠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장농 위에 둔 신문 등 종이 뭉치 등이 있어 쉽게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 난로의 불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 귀가하거나, 위 석유 난로의 불을 소화하지 않은채 귀가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등으로 부탁하여 이를 소화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 다할 것인 바, 가구류의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위 건물내에 목재로 된 자개장농 등 가구류를 보관하고 있어 건물의 구조 및 그 내부의 가연성 높은 가구류 등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진 A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위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 제1항의 면책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맺는 글

상법 제 659조(보험자의 면책) 1항에서는 보험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 중과실을 법정 면책으로

한 사유는 공서양속에 위배되고 보험 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됨과 동시에 보험이 도박화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화재보험 약관에서 고의, 중과실 법정면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약관 제 4 조 1항)

다만 중과실은 우연성을 전적으로 결여한 고의와는 질적 차이가 있는 점, 중과실과 통상의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 대단히 어렵고, 양자는 주의 의무의 정도 차이에 불과한 점, 또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초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보험 효용이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여 당사자 약정에 의해 중과실을 담보하여도 이는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상법 제 659 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배상 책임 보험은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성격상 중과실을 담보하여도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민사상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대하여는 고의와 과실(경과실)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요구되

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중과실과 과실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고 양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중과실 유무는 주어진 상황과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실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법 제 750 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은 면책되고 고의, 중과실의 경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실화자를 보호하고 있다. 동 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로 볼 수 있다.(1983. 2. 8선고 81 다 428 판결, 1990. 6. 12선고 88 다카 2 판결 및 1991. 4. 19선고 90 다 11509 판결 각 참조)

그러면 보험 계약법이나 화재보험 약관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중과실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보험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겠다. 보험에서 중과실을 담보하지 않는 취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염려가 있거나 신의칙 및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위 민사상의 중과실 해석 기준을 따르면서도 이를 상황에 따라 다소 완화하여 중과실은 반드시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 결여라고 엄격히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과실을 담보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 약관상의 중과실은 민사상의 중과실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생각컨대 보험 약관상의 보험계약자 중과실 해석은 보험자 면책이 당연한 것이라고 일반인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은 보험계약자와 동종의 직업이나 지위가 있는자에게 부여된 주의 의무의 정도, 피보험이익의 대소, 위험

환경,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성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보험 보상을 하는 것이 보험의 단체성, 선의성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㉞

